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46호 2017. 2. 27(월)

## 차 례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329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2017. 2. 27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제한이유

- 관련법령의 명칭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반영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「수산업법」 등 수수료 6종은 해당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세액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관련법령의 명칭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반영
- 「수산업법」 등 수수료 6종은 해당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삭제하였으므로 조례 개정하여 무료화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3. 20.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세무1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 ☎ 032-560-4966,  
FAX 032-560-2722 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